

우편대체법 일부개정법률안

(조옹천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255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9. 9. 19.

발의자 : 조옹천 · 신창현 · 기동민

김병관 · 맹성규 · 송기현

김영진 · 안호영 · 김해영

윤후덕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편대체 계좌의 이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,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이율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.

그런데 금융정책 및 감독정책의 일원화를 목적으로 구(舊)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국 및 금융정보분석원을 금융감독위원회와 합쳐 현재 금융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, 기존 재정경제부 소관 업무 중 일부가 금융위원회로 이관되지 않은 법률 조항이 있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는 등 개정되지 않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(안 제4조제1항 등).

우편대체법 일부개정법률안

우편대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후단 중 “기획재정부장관과”를 “금융위원회와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「한국은행법」 제28조제13호”를 “「한국은행법」 제28조제15호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기획재정부장관에게”를 “금융위원회에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이자의 지급) ①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한 이자의 지급 여부, 이율 및 계산 방법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. 이 경우 이율에 관하여는 <u>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</u> 다만, 「한국은행법」 제28조제13호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이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율을 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<u>기획재정부장관에게</u> 통보하여야 한다.</p>	<p>제4조(이자의 지급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<u>금융위원회와</u> -----. ----- <u>「한국은</u> <u>행법」 제28조제15호----- ----- ----- -----. ② ----- ----- -----<u>금융위원</u> <u>회에</u>-----.</u></p>